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보고서 ⑫]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점분야로서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6-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 2001.1.17 건	제12조 삭제(99·5·11)
설교통부령 제270호 건설교통부.)	제13조 (개별난방설비)
제1조 (목적)	제14조 (배연설비)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15조 삭제(96·2·9)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제16조 삭제(99·5·11)
제4조 삭제(99·5·11)	제17조 (배관설비)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제6조 (승강기의 구조)	제19조 삭제(99·5·11)
제8조 삭제(96·2·9)	제20조 (피뢰설비)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제11조 삭제(99·5·11)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제11조의2 삭제(99·5·11)	

〈표 6-1〉 건축사업

건축사업	건축사업시행령	건축사업시행규칙
건축사업(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3호 건설교통부)	건축사업시행령(일부개정 2000.5.10 대통령령 제16808호 건설교통부.)	건축사업시행규칙(일부개정 2000.5.22 건설교통부령 제236호 건설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삭제(95 · 12 · 30)	제2조 (건축사보의 신고등)
제3조 삭제(77 · 12 · 31)	제2조의2 (건축사보의 자격분야)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제3조 삭제(95 · 12 · 30)	제4조 삭제(2000 · 5 · 22)
제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조 삭제(2000 · 5 · 10)	제5조 (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
	제5조 (건축사자격 등)	제5조의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제6조 (사망신고)	제6조 (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
	제6조의2 (자격취소 등)	제7조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제2장 면허제6조 삭제(77 · 12 · 31)	제6조의3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7조의2 삭제(95 · 10 · 17)
제7조 (건축사자격의 취득)	제7조 (시험과목의 면제)	제8조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제8조 (자격)제9조 (결격사유)	제7조의2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9조 (경력 인정기준)
제10조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금지)	제8조 (시험과목등)제9조 (시험방법)	제10조 (수수료)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10조 (합격기준)제11조 (시험시행공고)	제11조 (설계도서신고서등)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 (경력 인정기준)	제12조 (현장점검등)
	제13조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제12조의2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제3장 시험제13조 (시험의 내용과 시행)	제14조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제13조 (건축사업무신고서 등)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제15조 삭제(2000 · 5 · 10)	제14조 삭제(80 · 7 · 15)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
제16조 (시험과목등)	제17조 (회의)	제15조의2 (소속기관의 범위)
제17조 (수수료)	제18조 (간사 및 서기)	제16조 (건축사업무신고부 등의 서식)
제18조 삭제(77 · 12 · 31)	제19조 (수당과 여비)	제17조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제19조 (업무내용)	제20조 (운영세칙)	제18조 삭제(95 · 10 · 17)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등)	제21조 (설계도서의 신고등)	제18조의2 삭제(82 · 8 · 24)
제21조 (표시행위)	제21조의2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제19조 (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제22조 삭제(2000 · 1 · 28)({시행일 2001 · 1 · 1})	제22조 (건축사업무신고)	제20조 삭제(2000 · 5 · 22)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23조 (신고기준)	제21조 삭제(96 · 1 · 18)
	제24조 (신고필증의 교부 등)	제22조 삭제(2000 · 5 · 22)
제5장 건축사무소	제25조 삭제(2000 · 5 · 10)	제22조의2 (처분결과통보)
제23조 (건축사업무신고 등)	제26조 삭제(95 · 9 · 2)	제23조 (수탁업무의 보고)
제23조의2 삭제(95 · 1 · 5)	제28조 삭제(2000 · 5 · 10)	제24조 삭제(2000 · 5 · 22)
제24조 (신고의 제한)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제25조 (과태료의 부과)
제25조 삭제(95 · 1 · 5)	제29조의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등의 기준)	제25조의2 (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 작성)
제26조 삭제(99 · 2 · 5)	제29조의3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제26조 (연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
제27조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 폐업등의 신고)	제30조 (건축사등의 연수교육)	
제28조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청문)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제30조 (보고·검사등) 제30조의2 (건축사등의 연수교육)	제32조 삭제((95·9·2)) 제33조 삭제((2000·5·10)) 제34조 (과태료의 부과)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 (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제6장 건축사협회제31조 (건축사협회) 제31조의2 (사업)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제33조 (회원)제34조 (임원) 제35조 (위임규정) 제36조 (민법규정의 적용) 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조 (설립의 인가 및 공고) 제38조의2 (감독)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삭제((95·1·5)) 제41조 (과태료)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삭제((84·12·31))		

〈표 6-12〉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일부개정 2000.2.3 법률 제 6262호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일부개정 2000.8.17 대통령령 제16953호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0.8.30 제98호 환경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상시측정) 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제5조 삭제((99·2·8 법5862))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제1조 (목적)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제3조 (가동개시의 신고제외대상) 제4조 삭제((99·6·8)) 제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제6조의2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제7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제7조의2 (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생략) 제9조 삭제((99·6·8)) 제10조 (운행차소음허용기준) 제10조의2 (항공기소음의 한도등)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제11조의2 삭제((99·6·8))	제1조 (목적) 제2조 (소음·진동배출시설) 제3조 (소음·진동방지시설등) 제4조 (자동차의 종류) 제5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6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7조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 제8조 삭제((97·10·22)) 제9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제9조의2 삭제((97·10·22)) 제10조 삭제((92·8·8)) 제11조 삭제((97·10·22)) 제12조 (방지사설의 설치면제) 제12조의2 삭제((99·7·19))
제2장 공장소음·진동의 규제 제8조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제9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등) 제10조 (방지사설의 설치) 제10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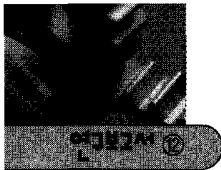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11조 (방지사설의 설계·시공) 제12조 (공동방지사설의 설치등) 제13조 (가동개시의 신고)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제15조 (개선명령) 제16조 (조업정지명령등) 제17조 삭제(99·2·8 법5862) 제18조 (허가의 취소등) 제19조 (위법사실에 대한 폐쇄조치등) 제20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제21조 (환경관리인) 제22조 삭제(99·2·8 법5862)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3조 (보고)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제15조 삭제(94·11·21) 제16조 (공동방지사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7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제18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등) 제19조 삭제(94·11·21) 제20조 (개선기간) 제21조 삭제(99·7·19) 제22조 (조업기간의 제한등) 제24조 삭제(99·7·19) 제25조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제26조 삭제(99·7·19) 제27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제28조 (환경관리인의 신고) 제29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등) 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32조 삭제(97·10·22) 제33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제33조의2 (이동소음의 규제) 제34조 (폭약사용 규제요청) 제35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36조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제37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37조의2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제38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제39조 삭제(97·10·22) 제40조 (인증의 신청) 제41조 (인증의 방법 등) 제42조 (인증서의 교부) 제43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44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제45조 (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제46조 (재검사의 신청등) 제49조 삭제(99·7·19) 제50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제51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52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5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제54조 (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제54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제54조의3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54조의4 (자료의 요청 등)
제3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4조 삭제(97·3·7)) 제25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제26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제26조의2 (이동소음의 규제) 제27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제4장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제28조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제29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30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제31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제32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3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3조의2 (인증의 양도·양수등) 제34조 (제작차의 소음검사등) 제35조 (인증의 취소) 제36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제39조 내지 제41조) 삭제 (97·3·7)		
제6장 항공기소음의 규제 제42조 (항공기소음의 규제)제6장의2 방음 시설의 설치기준등 제42조의2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p>제7장 방지사설업등 제7장 검사대행자 [[시행일 2000·8·4]] 제43조 (방지사설업의 등록)제44조 (결격사유) 제45조 (등록의 취소등) 제4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사설업의 계소증사) 제47조 삭제(99·2·8 법5871)) 제48조 (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8조의2 (결격사유) 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제8장 보칙제49조 삭제(95·12·29)) 제49조의2 (소음도표지의 부착권고) 제50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제51조 (보고 및 검사등)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4조 (첨문) 제54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55조 (수수료) 제5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9장 벌칙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제61조 (과태료) 제62조 (양벌규정)</p>		제55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6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56조의2 (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제58조 삭제(97·10·22)) 제58조의2 (공항주변의 지역구분) 제63조 삭제(2000·8·30)) 제70조 삭제(99·7·19)) 제71조 (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72조 (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73조 (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73조의2 (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73조의3 삭제(99·7·19)) 제74조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제78조 삭제(96·7·1)) 제79조 (검사수수료) 제80조 (환경관리인의 교육) 제81조 삭제(2000·8·30)) 제82조 (교육계획) 제8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84조 (교육결과보고) 제85조 (지도) 제86조 (자료제출협조) 제87조 (교육경비) 제87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87조의3 (소음·진동검사기관) 제88조 (행정처분기준) 제89조 삭제(99·1·25)) 제89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90조 (수수료) 제91조 삭제(97·10·22))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표 6-13〉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p>전기공사업법(전문개정 1999.1.29 법률 제 5726호 산업자원부)</p> <p>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p>	<p>전기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9.8.6 대통령령 제16511호 산업자원부)</p> <p>제1조 (목적) 제2조 (전기공사) 제3조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제4조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등)</p>	<p>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0.6.26 산업자원부령 제101호 산업자원부)</p> <p>제1조 (목적) 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확인 등) 제3조 (등록신청 등) 제4조 (등록신청서류의 보완)</p>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2장 공사업의 등록등 제4조 (공사업의 등록)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소 접수) 제7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8조 (공사업양도의 제한) 제9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제10조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 등) 제6조 (등록기준) 제7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제11조 (하수급인 등의 변경요구) 제12조 (시공관리의 구분) 제13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4조 (감독)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6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제17조 (주요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의 범위)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등)	제5조 (등록신청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제6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제7조 (등록관리) 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9조 (공사업의 폐업신고) 제10조 (전기공사도급대장) 제11조 (하도급통지서) 제12조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 제13조 (표지의 게시 등)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18조 (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19조 (시공능력의 평가 등) 제20조 (수수료) 제21조 (과징금 등의 징수 절차)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금지)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제20조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제2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제23조 (공사업자표시의 제한) 제24조 (전기공사표지의 게시 등)		
제5장 공사업자단체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6장 감독 제27조 (시정명령 등) 제28조 (등록취소 등) 제2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제30조 (청문)		
제7장 보칙 제31조 (공사업관련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등)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5조 (수수료) 제36조 (비밀의 누설금지) 제37조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9조 (중소공사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제8장 벌칙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표 6-14〉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58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4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1. 7. 3 정보통신부령 제112호 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사의 제한) 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사의 범위) 제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 제4조 (경미한 공사)	제1조 (목적) 제2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제3조 (감리원의 자격확인 등) 제4조 (감리결과의 통보) 제5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6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7조 삭제(99· 7· 1)
제2장 공사의 설계· 감리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제7조 (설계등) 제8조 (감리등) 제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1조 (감리결과의 통보)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12조의2 (용역업의 육성 등)	제2장 공사의 설계· 감리 제5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6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7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 (감리원의 자격 등) 제9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0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제11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제9조 (공사업등록대상 등) 제10조 (공사업양도신고 등) 제11조 삭제(99· 7· 1) 제12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제13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제14조 (공사실적 등의 신고) 제15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16조 (하도급계약승낙신청서 등) 제17조 삭제(99· 7· 1)
제3장 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3조 삭제(99· 2· 5)	제3장 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3조 삭제(99· 6· 30) 제14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8조 (사용전검사의 절차)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2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 등)

정보통신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법시행규칙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제15조 (공사업등록대상)	제22조 삭제((99·7·1))
제15조 (등록의 기준)	제16조 (등록기준)	제23조 (영업정지 등)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24조 (행정처분기록부)
제17조 (공사업의 양도등)	제18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5조 (보고)
제18조 삭제(99·2·5))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6조 (수수료)
제19조 (공사업양도의 내용등)	제19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27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등)
제20조 삭제(99·2·5))	제20조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1조 (공사업의 상속)	제21조 (시공능력의 평가)	
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들의 계소 증사)	제22조 (하도급의 범위 등)	
제23조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2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24조 (공사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제24조의2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2절 도급 및 하도급제25조 (도급의 분리)	제25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26조 (공사도급의 원칙등)	제26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27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28조 삭제(99·2·5))	제27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29조 (공사의 도급)	제5장 공사업관련단체	
제30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금지)	제28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31조 (하도급의 제한등)	제29조 삭제(99·6·30))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0조 (협회의 감독)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	제31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3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제34조 삭제(99·6·30))	
제34조 삭제(99·2·5))	제35조 (보증범위)	
제35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 (보증한도)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제39조 삭제(99·6·30))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40조 (수수료·이자 등)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41조 (조합의 감독)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등)	제6장 (제42조 내지 제54조) 삭제(99· 6·30)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등)	제7장 감독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등의 금지)	제55조 (공사시행의 시정명령 등)	
제5장 공사관련단체	제56조 삭제(99·6·30))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57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42조 (회원의 자격)제43조 (건의)	제8장 보칙	
제44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59조 (공고)	
제46조 (조합의 사업)		
제47조 (대리인의 선임)		
제48조 (지분의 양도등)		
제49조 (조합의 자본취득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 (조합의 책임)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제52조 내지 제63조) 삭제 (99·2·5) 제7장 감독 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5조 (시정명령등) 제6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68조 (청문) 제68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8장 보칙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 (직무상 알게된 사실의 누설금지) 제7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72조 (등록등의 공고) 제73조 (수수료) 제9장 벌칙 제74조 (벌칙) 제75조 (벌칙) 제76조 (벌칙) 제77조 (양벌규정) 제78조 (과태료)	제60조 (과태료)	

〈표 6-15〉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1. 3.26 건설교통부령 제273호 건설교통부)	제7조 (적용의 특례)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 (기준척도)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제15조 (승강기등) 제16조 (계단) 제17조 (복도) 제18조 (난간) 제20조 삭제('96·6·8) 제21조 (화장실등)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제23조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타 부대시설) 제5조 (기타 복리시설) 제6조 (단지안의 시설)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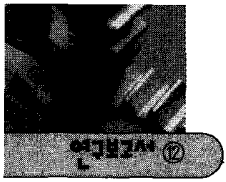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p>제24조 (구조내력등)</p> <p>제4장 부대시설</p> <p>제25조 (진입도로)</p> <p>제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p> <p>제27조 (주차장)</p> <p>제28조 (관리사무소)</p> <p>제29조 (조경시설등)</p> <p>제30조 (수해방지등)</p> <p>제31조 (안내표지판등)</p> <p>제32조 (통신시설)</p> <p>제33조 (보안등)</p> <p>제34조 (가스공급시설)</p> <p>제35조 (비상급수시설)</p> <p>제36조 삭제(99·9·29)</p> <p>제37조 (난방설비등)</p> <p>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p>	<p>제39조 삭제(99·9·29)</p> <p>제55조 (노인정등)</p> <p>제40조 (전기시설)</p> <p>제41조 (소방시설)</p> <p>제42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p> <p>제43조 (급·배수시설)</p> <p>제44조 (배기설비)</p> <p>제45조 삭제(98·8·27)</p> <p>제5장 복리시설</p> <p>제46조 (어린이놀이터)</p> <p>제47조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p> <p>제48조 삭제(98·8·27)</p> <p>제49조 삭제(94·12·30)</p> <p>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p> <p>제51조 삭제(93·9·27)</p>	<p>제52조 (유치원)</p> <p>제53조 (주민운동시설)</p> <p>제54조 삭제(99·9·29)</p> <p>제6장 대지의 조성</p> <p>제56조 (대지의 안전)</p> <p>제57조 (간선시설)</p> <p>제7장 (제58조 내지 제61조) 삭제 (99·9·29)</p> <p>제8장 공업화주택</p> <p>제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p> <p>제62조 삭제(99·9·29)</p> <p>제62조의2 삭제(99·9·29)</p> <p>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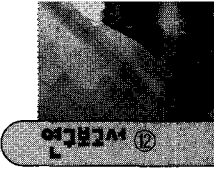
표 6-16)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0호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1.9.22 건설교통부령 제296호 건설교통부)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 (공급기준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종류)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삭제(81·8·24)	제3조 (기간도로)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등)	제3조 (주택단지의 범위)	제4조 (주택건설계획서등)
제5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제4조 삭제(91·1·15)	제5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제4조의2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제6조 (주택조사)
제6조의2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 (주택건설종합계획)	제7조 (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제6조의3 (등록업자의 시공)	제6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제7조 (등록의 말소등)	제7조 (주택조사)	제9조 삭제(94·8·16)
제7조의2 (사업의 계속수행)	제8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제9조의2 (등록업자의 처분통지등)
제9조 삭제(99·2·8 법5908)	제9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제10조 삭제(99·6·29)
제1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제9조의2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제11조 (등록업자대장)
제10조의2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제10조 삭제(94·7·30)	제11조의2 삭제(98·8·14)
제10조의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배제 기준)	제11조의3 (영업실적등의 제출)
제10조의4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제10조의3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제11조의4 (월별 분양계획서등의 제출)
제10조의5 (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의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1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제11조 삭제(99·4·30))	제12조 (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제14조 삭제(81·4·7))	제11조의2 삭제(99·4·30))	제12조의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제11조의3 삭제(98·4·30))	제12조의3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11조의4 (영업실적등의 제출)	제13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제17조 (주택복권의 발행 등)	제11조의5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제13조의2 (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제18조 (입주자저축등)	제11조의6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13조의3 (매입필증의 교부)
제19조 삭제(81·4·7))	제12조 (기금 또는 자금의 범위등)	제13조의4 (매입필증의 재발행)
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의2 (국민주택기금에의 임의예탁자금)	제13조의5 (매입필증의 접수)
제21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제13조의6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
제22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13조의2 (국민주택기금제정의 설치등)	제14조 (사실증명서)
제23조 삭제(89·4·1))	제13조의3 (국민주택기금의 계리)	제14조의6 삭제((2000·3·27 건설교통령232))
제24조 (국, 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제14조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등)	제15조 (주택상환사채)
제25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제14조의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	제15조의2 (주택상환사채모집 공고)
제26조 (사업부진용지의 사용)	제14조의3 (결산보고서의 제출)	제16조 (사채의 상환등)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14조의4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제28조 (발행책임과 조건등)	제14조의5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18조 (사업주체의 변경)
제29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18조의2 (주택건설대지의 신탁)
제30조 (상법규정의 적용)	제15조의2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등)	제18조의3 삭제((2000·6·17))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제15조의3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및 상환)	제1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2조 (주택의 공급)	제15조의4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등)	제19조의2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2조의2 (토지에의 출입등)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등)	제19조의3 삭제((93·7·8))
제32조의3 (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제16조의2 (국민주택채권의 재발행금지등)	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제32조의4 삭제((99·2·8 법5908))	제17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제18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21조의2 (사업계획승인의견서)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제19조 삭제(81·8·24))	제22조 (사용검사등)
제33조의3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제20조 (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제22조의2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제33조의4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제20조의2 삭제((94·7·30))	제22조의3 (임시사용승인의 신청)
제33조의5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21조 (주택복권 발행업무의 위탁)	제22조의4 (감리자의 지정등)
제33조의6 (주택의 감리등)	제22조 삭제((94·7·30))	제22조의5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 등)
제33조의7 (주택사업의 전산화)	제22조의2 (입주자저축등)	제22조의6 (감리자의 업무등)
제34조 (토지수용법의 준용)	제23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의7 (감리대가의 지급등)
제35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제2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제2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2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	제24조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제37조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례)	제24조의2 삭제((99·6·29))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제26조의2 삭제((99·4·30))	제25조 (주택업무의 전산처리보고)
제38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제26조의3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	제30조 삭제((91·4·12))
제38조의3 삭제((99·2·8 법5908))		제3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9조 (주택관리업)		
제39조의2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제39조의3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39조의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대대상주택)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제39조의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32조의2 (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39조의6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제27조의2 (등록업자의 사채발행)	제32조의4 삭제((98·8·14))
제39조의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27조의3 (사채의 발행요건등)	제33조 삭제((99·6·29))
제40조 (채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	제27조의4 (사채의 상환등)	제33조의2 삭제((99·6·29))
제41조 삭제((99·2·8 법5908))	제28조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제33조의3 삭제((93·7·8))
제41조의2 삭제((99·2·8 법5908))	제29조 (납입금의 사용)	제34조 (주택건설실적확인등)
제47조 (공급질서교란 금지)	제30조 (주택의 규모)	제43조 삭제((99·2·8 법5908))
제47조의2 (서류의 열람)	제30조의2 삭제((91·1·15))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제47조의3 (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1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제44조의2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제47조의4 (협회의 설립인가등)	제31조의2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장권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등)	제44조의3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제47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제31조의3 (부기등기 등)	제44조의4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제47조의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제31조의5 삭제((99·4·30))	제45조 (공업화주택등의 인정등)
제47조의7 (업무)제47조의8 (자본금 및 출자)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제45조의2 삭제((99·2·8 법5908))
제47조의9 (임원 및 이사회)	제32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제45조의3 (인정의 취소)
제47조의10 (민법규정등의 준용)	제32조의3 삭제((88·6·16))	제45조의4 (공업화주택의 건설)
제47조의11 삭제((99·2·8 법5908))	제32조의4 삭제((93·2·20))	제46조 (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제47조의12 (협회등의 지도·감독등)	제32조의5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등)	
제48조 (감독)	제3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제48조의2 (청문)	제34조 (사용검사등)	
제49조 (보고 검사등)	제34조의2 (시공보증자등의 사용검사)	
제50조 (권한의 위임등)	제34조의3 (임사사용 승인등)	
제50조의2 (벌칙)	제34조의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50조의3 (벌칙)	제34조의5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51조 (벌칙)	제34조의6 (감리자의 자격등)	
제52조 (벌칙)	제34조의7 (감리자의 업무)	
제52조의2 (벌칙)	제34조의8 (이의신청의 처리등)	
제52조의3 (과태료)	제34조의9 (감리자의 교체등)	
제53조 (양벌규정)	제34조의10 (부실감리자등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제)	제34조의11 (주택업무의 전산처리절차 등)	
제54조 (시행령)	제34조의12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등)	
	제36조 (간선시설설치비 상환)	
	제37조 삭제((99·4·30))	
	제38조 삭제((79·11·21 대령9665))	
	제40조 삭제((91·1·15))	
	제40조의2 삭제((91·1·15))	
	제41조의2 삭제((91·1·15))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제42조의2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의3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42조의4 (안전진단의 실시) 제42조의5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 제42조의6 (1조합원 1주택의 예외) 제42조의7 (대규모 재건축사업)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등) 제43조의2 (협회의 설립등) 제43조의3 (협회의 사업) 제43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등) 제43조의5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제43조의6 (회사의 업무) 제43조의7 (보증업무의 수행) 제43조의8 (출자) 제43조의19 삭제((99·4·30)) 제43조의20 (협회의 감독) 제43조의21 (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44조 (사업주체에 대한 감독) 제44조의2 삭제((97·12·31 대령 15598)) 제45조 (권한의 위임) 제46조 (권한의 위탁)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표 6-17〉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제정 1996.12.30 법률 제5224호 환경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 1998.12.31 환경부령 제53호 환경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6호 환경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지하시설) 제4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공정시험방법) 제5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유지기준의 설정) 제6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등) 제7조 (개선명령) 제8조 (보고 및 검사등) 제9조 (권한의 위임) 제10조 (벌칙) 제11조 (과태료) 제12조 (양벌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지하시설의 규모) 제3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 제4조 (권한의 위임) 제5조 (과태료의 부과)	제1조 (목적) 제2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 제3조 (지하공기질기준) 제4조 (중앙공조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제5조 (개선기간) 제6조 (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제7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8조 (보고) 제9조 (지하공기질의 검사기관)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표 6-18〉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 2000.6.3 건설교통부령 제240호 건설교통부)	제3조 (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제1조 (목적)	제4조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제1조의2 (정의)	제5조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제2조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제6조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상)
제2조의2 (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제7조 (활용실적보고)
	제8조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6-3 외국의 설비관련 법규와 제도

6-3-1 미국의 제도

1. 건설업 허가제도

미국은 우리나라 건설업법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일률적인 제도는 없다. 건설업허가는 주정부가 관장하며 주별로 건설업허가가 필요한 주와 등록만으로 가능한 주, 허가자체가 필요 없는 주로 분류된다.

동부는 전통적으로 건설업이 성숙돼 있고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주가 대부분이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가 20만개사, 유지,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라이선스를 갖지 않은 회사가 20만개사에 달한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간판, 페디오(Patio), 주택증축, 기존건물변형, 재개발, 새 건물, 토지분할, 지목변경, 주택단지 혹은 상가와 주택건설 등은 공사허

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사허가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지방정부의 건축과를 찾아가 사전 허가상담(pre-application conference)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향후 도로계획이나 해당사업의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지적해 주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건축설계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설계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신청절차는 허가신청서와 설계도면 청사진을 25-28장 정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심사절차는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일반건축설계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 도로, 기존건물, 새 건물의 면적, 신청한 건물의 출입구, 내부 출입구의 연결방향, 공원, 교통, 이웃토지 혹은 공공시설기관(전화, 수도, 하수구, 전기, 학교 관리 등), 토지 地役權(easement)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검토한다.

〈표 6-19〉 미국의 건설업 허가제도

구 분	해 당 주	비 고
건설업 라이선스 취득과 등록이 필요한 주	캘리포니아주	Contractor's license 취득 → 건설업자로서 등록
등록만 필요한 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 메사추세츠주	
라이선스, 등록 2가지 다 불필요한 주	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 등	

각 시나 카운티에 따라 건축과의 기구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미국 내 어느 곳이나 거의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지불비용도 다른 실정이다.

건축허가 심의과정은 신청자 건축과 행정부 심사위원회 건축심사위원회 (이웃주민에게 통고) (주민공청회) (주민공청회) 시위원회 최종허가의 과정을 거친다

2. 발주제도

가. 입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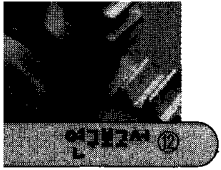
연방정부에 의한 계약은 수 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조달 범위의 물품과 서비스(건설 포함)를 내용으로 하여 공급을 원하는 기업과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을 낙찰할 때 사용되는 경쟁적인 입찰방법은 FAR의 Subpart 6.4, Part 14, Part 15에 규정된 "일반경쟁입찰(봉인입찰)(seal bidding)과 제안경쟁입찰(competitive proposals) 두가지 범주에 근거하고 있다. 공개시장 한계(\$25,000)를 넘는 상당한 정부의 조달계약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입찰방식의 결정은 계약담당관이 판단한다. 또한, 계약담당관은 기술적 보좌관으로 Construction Manager(CM)를 임명할 수 있다. (내무성 개척국의 입찰상황을 보면 전 계약건수의 약 95-98%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임. 대규모 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은 약 70% 정도이며 나머지는 협상 또는 2단계입찰 방식임. 입찰시 응모자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평균 8-13개사이며 협상입찰의 경우 평균 4-6개사임.)

일반경쟁입찰은 가격만으로 입찰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경쟁입찰적용을 위한 최근 법령은 The 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of 1984(PL 98-369)이다. Armed Services

Procurement Act of 1947과 Federal Property & Administration Services Act of 1949를 수정한 the Act of 1984(경쟁계약법)의 조달 규정들은 1985년 3월 31일 이후 발행된 입찰권유서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였다. 일반경쟁입찰의 필수사항들은 ① 정부조달내용의 공표, ② 봉인된 입찰서(일반적으로 초대장: Invitation for Bids IFB)의 권유, ③ 모든 입찰서의 공개, ④ 적 정한(responsive) 입찰서를 제출한 책임있는(responsible) 입찰자에게 낙찰된다. 미국 공공공사의 건설업자 선정은 대부분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공사의 내용이 질과 양 모두가 구체적이며 또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발주자, 입찰자 모두 공사비의 적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적산금액과 실제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공사 등이다.

일반경쟁입찰(sealed bidding)의 목적은 ① 모든 유자격 개인 또는 기업들에게 정부조달계약에 경쟁할 기회를 주고, ② 부당한 정실, 담합, 기만을 방지하며, ③ 경쟁의 이점을 정부가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경쟁입찰의 사용에는 상당한 제약점이 있다. 첫째, 일반경쟁입찰은 정부가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경쟁이 입찰자로 하여금 가능한 최저가격을 제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 충분한 준비(각오)가 되어 있고 능력 있는 경쟁적인 공급자들이 존재해야 만 한다. 셋째, 절차 즉 조달 공표, IFB준비 및 배포, 입찰서의 공개 및 평가 등에 순응하기 위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제출된 입찰서들은 입찰개시 일자부로 고정된다. 변경이 정부에게 유리 하더라도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단일 변수에 근거하여 입찰서가 평가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고정가격 계약 또는, 물가변동과 같은 경제적 가격조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고정가격 계약들의 낙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제안형경쟁입찰은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의 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수의시답 또는, 협상입찰)과 선 기술제안서, 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2단계 계약입찰)2가지가 있다. 제안형경쟁입찰은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와 가격제안서(cost proposal)를 제출하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반드시 최저가격의 제안자에게 낙찰된다고 할 수 없다. FAR6.401(b)은 일반경쟁입찰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형입찰방법을 채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방식의 기본은 일반경쟁입찰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공사의 내용, 종류에 따라서는 계약담당관의 판단에 의해 제안형경쟁입찰을 채용할 수가 있다. 이방식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FAR 15참조)

- ①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 ② 도면 및 시방서만으로 공사의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곤란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내용 등에 대하여 입찰자와 교섭, 협의를 하고 싶은 경우
- ③ 제안형경쟁입찰의 경우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적절한 기술시방서로 공사를 정의,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나. 하도급제도

미국에서 건설공사 특히 연방 및 주 발주 공공공

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지의 제도, 관행상 하도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입찰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로서의 정부기관과 시공사로서의 하도급자간에는 계약상 직접적 관련은 없고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사망한 경우나 업체의 해산, 도산, 보증금 지불불능 등 공사진행에 명확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발주관청의 계약 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해당 하도급자의 교체승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자 교체를 승인한다. 하도급자를 교체할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않으나 감액될 때에는 원도급 금액에서 삭감한다.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일괄 하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연방정부 공사의 경우 최소한 12%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행토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공공부문공사 하도급의 경우 입찰을 통해 하도급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도급을 위한 입찰은 원도급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실시하며 최종 선임권은 원도급자에게 있다.

하도급대금의 지불 등 하청업자에 대한 계약상의 보호조치로서 원도급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노임, 자재 등 계약에 규정된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지불보증(Payment Bond)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원도급자의 하청대금 지불은 이에 따라 보증되고 있다.

하도급 시행지침은 주에 따라 다르다. Maryland 주의 경우는 주 도로 행정국의 발주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적어도 당해 공사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교통시설 관련 공사를 도급 받은 원도급자는 최소한 50%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있어 켄터키주 및 펜실베니아주는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해서도 사전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하도급 업체의 선정 및 원도급자의 관계 등에 대하여는 전술한 GSA 외에 미종합건설업협회(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AGC), 미건축사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등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도급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각 공종별로 공사를 담당할 하청업체의 명단을 발주처 및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하도급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나 공사 감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원도급자와 하도급 업체의 관계를 쌍무계약 관계로 보며 원도급자는 하청업체의 작위 및 부작위의 모든 의무 이행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통계(U.S Census of 1992)에 의하면 미국의 각종건설업체 총수는 약 50만에서 60만 개이며 이중 77%가 하도급 업체로 추정된다. 이들 하도급 업체는 전체 공사 물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다. 공사발주기관

민간기업 발주자로는 발주자, 건설업자, 설계자, 엔지니어 등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의 특징적인 존재로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현장 작업원의 공급을 맡고 있는 유니언이 있다.

공공사업의 주 발주자(공공기관)는 일반조달청(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보건교육후생성, 각 성영선부, 연방조달국 교통성(DOT) 주택성(HUD), 내무성 개척국, 육군공병대(COE), 각 주정부, 군·읍·면 등의 지방정부등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발주자로서 GSA를 들

수 있는데, 연방정부의 건축 물 건설 및 감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1개소의 지방부국 이 그 지방의 정부 건물 신축·보수·개축 등에 대한 모든 계약 체결과 감독 임무를 맡고 있다. 내무성 개척국은 댐, 발전소, 수로 등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내무성 개척국이나 육군공병대(COE)는 자체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자체 소유 공공시설을 건설한다. (예컨대 주의 법원 건물 등은 주정부가 건설)

자체적으로 엔지니어를 둔 연방정부의 행정기관 수가 적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각 행정기관이 발주자로 되어 있으나 공사 감리를 COE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상대방은 COE가 된다.

3. 보증제도

미국에서는 입찰단계에서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입찰보증서를 첨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계약단계에서는 이행보증과 지불보증 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입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보증회사는 공사실적, 경영규모, 경영상태 등에 의해 건설업자를 심사한다.

가. 입찰보증

입찰보증 본드는 업자의 무책임한 입찰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입는 손해를 보증하는 것이다.

보증금액은 통상 입찰안내서에 명기되고 있으며, 연방조달규칙(FAR)28.101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액은 최저로 입찰 가격의 20%, 최대로 300만달러로 되어있고, 연방정부의 입찰에서는 통상 입찰

가격의 20%를 보증금액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계약 입찰보증은 입찰계약자의 부담 없이 종종 보증회사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는 계약한 입찰자가 동일한 보증회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이행 및 대금지불보증서를 구입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나. 지불보증

지불보증서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노동력 및 자재의 제공자 또는, 협력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지불보증 본드는 건설업자가 노무자 및 자재제공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미리 건설업자로부터 지불보증 본드를 확보, 발주자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활용되고 있다. 계약시에 제출한다.

연방조달규칙 28.102의 규정에 따르면 지불보증 본드의 금액은 계약금이 2만 5천달러 이하는 보증 필요 없으며, 계약금이 100만 달러 이하는 계약금액의 50%가 필요하고, 계약금이 100~500만달러 이하는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이 500만 달러 이상은 250만 달러가 필요하다.

다. 이행보증

이행보증 본드는 건설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자가 입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증금액은 계약금의 100%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계약 시에 제출하며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할 경우 이 보증서는 무효가 된다. 종종 계약이후 일정한 기일 내 또는, 착공 명령의 발행 후에 일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권유서(Solicitation)또는, 입찰초대장(IFB)에 제

출기한이 정해진다. 이행보증본드는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기간의 보증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건설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없으며 발주자가 적절히 처분하고 서식은 발주자에 따라 다르다.

4. 감리제도

가. 감리주체 및 방법

미국은 건설공사의 입찰, 계약, 시행방법 등이 한국과 다를 뿐 아니라 공사시행주체,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계약 형태가 다르다. 정부 조직체제도 주정부에 상당한 자치권이 주어져있는 지방자치체에 기반을 두고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건설행정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건설관련 규정이 법령에 의해 강제되기보다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수행 절차나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건설공사 감리와 관련하여서도 각 기관의 보유인력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법과 절차가 다양하므로 감리제도를 통일된 형태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감리'와 대응하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Supervision', 'Inspection' 그리고, 업무 범위에서 차이는 있으나 'CM' 등을 들 수 있겠다.

Supervision은 시공행위를 감독한다는 의미로서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감독 활동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Inspection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가를 검측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국내 공사감리 업무영역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국내 공사감리 업무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CM은 공사감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업무의 범위는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나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공공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리가 감리회사에 발주되는 경우 주정부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책과 규정에 따라 외주 대상공사의 성격 및 규모, 감리회사의 선정, 계약방식 등을 결정하게되고 감리회사의 의무, 책임, 권한 등은 전적으로 양자간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감리회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CM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공사감리를 제3의 민간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주정부 규정 또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책과 규정에 근거하여 외주대상 업무의 성격과 범위, 감리회사 선정 및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감리회사와 발주자간의 의무와 책임, 권한은 전적으로 계약 내용에 준하며, 대개 감리회사는 공사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품질보증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지게 된다.

나. 감리원 체계

국내 감리제도하에서 감리원이 수행하는 감리업무의 성격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감리원은 크게 'Engineer' 와 'Inspector' 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ngineer는 Inspector를 관리하며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Inspector는 단순히 시공자들의 작업내용을 검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ngineer가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 정부에서 인정하

는 전문기술자격(PE: Professional Engineer)을 소지한 자로 규정되며 Inspector의 경우에는 경험을 우선적 자격조건으로 고려하기도하고 소정의 교과과정 이수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 감리관련 법체계

시설물 관련 법규(Uniform Building Code, Section 305)가 연속적인 검측을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의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이 감리원의 책임 및 권한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법규는 없으며 주로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라. 감리의 책임과 권한

미국엔지니어계약위원회(Engineer Joint Contract Documents Committee)는 상주감리원의 책임, 의무,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책임감리제도에서 감리원의 권한강화의 일환으로 감리원에게 주어진 '공사중지 명령권' 과 '재시공 명령권' 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다. 즉, 발주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하거나,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계약의 연장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순수한 감리업무만을 수행하는 제3의 감리회사의 경우 계약에 근거 없이 그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즉, 감리원이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 계약내용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시공자가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가 법정문제로 이어질 때 '공사에 대한 간섭' 으로 해석되어 감리회사에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Inspector의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을 제한하고 있다.